

용 마 터 널 민 간 투 자 사 업

실 시 협 약 서(변경)

2018. 6. 8.

서 울 특 별 시

용 마 터 널 주 식 회 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정의)	1

제 2 장 기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1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12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12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13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13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14
제 9 조 (행정절차)	14
제 10 조 (설계내용관련 보완사항의 처리)	15
제 11 조 (점유사용권)	15
제 12 조 (유물 및 위험물)	15
제 13 조 (지장물)	16
제 14 조 (민원처리)	16
제 15 조 (공사의 도급)	17
제 16 조 (공사의 착수)	18
제 17 조 (공정관리)	18
제 18 조 (기성검사)	19

제 19 조 (안전관리)	19
제 20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19
제 21 조 (설계감리)	19
제 22 조 (공사감리)	20
제 23 조 (준공검사)	20
제 24조 (지체상금)	21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22

제 4 장 총사업비 및 통행료

제 26 조 (총사업비)	22
제 27 조 (통행료의 징수)	25
제 28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25
제 29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26
제 30 조 (사업수익률)	26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26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27
제 33 조 (통행료 징수 방법)	28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28
제 35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29
제 36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30
제 37 조 (운영비용)	30
제 38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31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제 39 조 (통행료수입 환수)	31
제 40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32
제 41 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33
제 42 조 (재정지원의 절차)	33
제 43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35
제 44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35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5 조 (위험배분의 원칙)	36
제 4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7
제 47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38
제 48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39
제 4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41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0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42
제 51 조 (협약의 해지)	43
제 52 조 (매수청구권)	45
제 53 조 (해지시지급금)	46
제 54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47
제 55 조 (협약 종료의 효과)	49
제 56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50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7 조 (양도)	50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51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59 조 (준거법)	52
제 60 조 (분쟁의 해결)	52
제 61 조 (분쟁금액)	52
제 62 조 (중재)	52
제 63 조 (합의관할)	53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4 조 (협약의 효력)	53
제 65 조 (해석)	54
제 66 조 (문서의 우선 순위)	54
제 67 조 (협약의 변경)	55
제 68 조 (협약의 수익자)	56
제 69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56
제 70 조 (일부무효)	56
제 71 조 (비밀유지)	56
제 7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7
제 7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57
제 74 조 (권한의 위임)	58

제 75 조 (통지)	58
제 76 조 (본 협약의 승계)	59
제 77 조 (언어)	59

부 록

1.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용	62
2. 총(민간)사업비	63
3. 추정통행량	64
4. 차종별 기준통행료	65
5. 추정 통행료수입	66
6. 운영비용	67
7.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68
8. 보험내역	69
9. 자금투입계획	70
10. 재무모델	71

실시협약(변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용마터널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정의된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8월 12일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이하 “기존협약”)를 체결하였는 바, 각 당사자(아래 정의됨)는 기존협약의 체결이후, 일부 개정된 민간투자법(2009. 4. 1. 개정 법률 제9556호), 동법시행령(2009. 4. 21. 개정 대통령령 제21434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2009. 3. 27.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에 따른 변동사항과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여건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존협약에 반영하여 2009년 11월 12일 변경실시협약(이하 “기존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자금제조달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변경실시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2018년 6월 8일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이하 “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감리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건설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58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80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5. “공사기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7. “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부록 2(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8. “공사착수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9.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0.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로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금융완결”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최초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12. “기본적 기능충족”이란 본 사업시설과 동종의 시설에 대하여 건설산업일반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준통행료”라 함은 제29조에 정한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말한다.
1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15. “담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7. “대리은행”이라 함은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인출 및 상환, 자금차입계약의 사후관리 기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8. “대주단”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군인공제회 등을 말한다.
19.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에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본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21.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제52조,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말하며, “매수”라 함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시설 또는 관리운영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매수청구인정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매수를 인정하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23. “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4.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함은 본 협약의 해지에 있어서 부록 7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해지일 현재의 가치를 말한다.
25.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77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26.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928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말하며, 그 개정된 시행령을 포함한다.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2-5호(2002년 5월 10일자)로 공고한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개정된 계획을 포함한다.
28. <삭제>
29. “본 도로”라 함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총연장 3,566m(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4~6차로 용마터널, 지하차도, 교량 및 영업소 도로를 말한다.

30.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1.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된 모든 토지나 지역을 말한다.
32.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도로와 도로부대시설을 말한다.
33.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34. “분기”라 함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35.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48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36.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37.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라 함은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38.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9. “사업수익률”이라 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말한다.
40.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협약의 당사자인 용마터널 주식회사를 말한다.
41. “사업연도”라 함은 운영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최종 사업연도는 운영기간 최종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운영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2.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2002년 3월 4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용마터널건설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를 말한다.
43. “서울특별시”라 함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44.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3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45.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자 또는 통행료 등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자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2001년 5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한다.

- 46.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660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말하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 48. “실시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과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 49. “운영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통행료의 징수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50. “운영기간”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51. “운영비용”라 함은 제37조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 52.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53. “유물”이란 대한민국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부지나 본 사업시설 내, 그 위나 아래 또는 그 근처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역사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유물을 말한다.
- 54.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 55. “잉여수익금”이라 함은 특정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과 당해 사업연도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과의 차액에서 제세공과금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56. “자금차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57.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 58. “적정가치”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사업비를 해지일의 가격으로 환산(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각 지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59. “전문기관”이라 함은 수시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 60. “제반공급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 및 송유관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 61.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61의2.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이라 함은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통행료수입 발생시 동 초과수입 발생분에 투입되는 인건비, 초과수요처리에 해당하는 영업비, 유지관리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를 말한다.

- 62.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 63. “준공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이 실제 준공된 날로서 준공확인필증상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 64. “준공전사용인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받는 것을 말한다.
- 65. “준공확인필증”이라 함은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66.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의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로서 유물과 위험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67. “착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개시하기로 예정된 날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라 연장된 날을 포함한다.
- 68.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제26조에 따라 결정될 총(민간)사업비를 말한다.
- 69. “충선순위채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을 포함하며, 투자적격등급이라 함은 BBB-의 등급을 말함)으로서 해지일 현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 총액(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서 자금

- 차입계약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금액과 후순위차입금은 충선순위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70. “추정통행량”이라 함은 부록 3(추정통행량)에 기재된 추정통행량을 말한다.
- 71. “추정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 징수로 얻은 추정 수입으로서 부록 5(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다.
- 72. “출자자”라 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용)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 및 기타 수시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게 될 자를 말한다.
- 73. “통행료”라 함은 본 협약과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통행차량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통행료를 말한다.
- 74. “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통행료의 징수로 얻은 실제 수입을 말한다.
- 75.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함은 제51조 제5발생통지”라 통지를 말한다.
- 76. “해지시지급금”이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 77. “해지일”이라 함은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날을 말하며, 매수청구인정일을 포함한다.
- 78. “해지통지”라 함은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통지를 말한다.
- 79.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추정통행료수입의 100%를 말한다. 다만, 암사대교 구간의 완공 및 운영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0. “회사채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81.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으로부터 당해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권리를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

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영위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① 사업시행자는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은 아래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②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하는 즉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됨과 관련하여 관련 세법의 적용 또는 개정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은, 달리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2.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통행료징수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출자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법인의 설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 변경)

- ① 출자자 및 그 출자예정비율은 부록 1(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전체 출자지분 중 5%이상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출자자간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지분을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 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공법변경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9 조 (행정절차)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10 조 (설계내용관련 보완사항의 처리)

환기시설, 갭문형식, 방화문 형식 등을 포함한 설계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심의과정에서의 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총사업비를 증가시키없이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 기본적기능충족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점유사용권)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제세공과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을 처리하기로 한다.

제 12 조 (유물 및 위험물)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하며, 유물이 발견된 동일한 위치와 조건대로 유물을 보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즉

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유물을 발굴하거나 위험물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본 사업부지내 출입을 허용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제 13 조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장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이설 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간중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장물의 이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비용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특별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킴 없이 처리한다.

제 15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002년 9월 11일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15)에 의한 적격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 방법 및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위 하수급인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 과정에서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중 체불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제 16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착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예정일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착공예정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러한 사유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착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공사 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에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전체 공정과 당해 연도 예정공정표 및 당해 연도 시공부분이 표시된 노선도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매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누계 공정이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에 대비하여 90% 미만인 경우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

고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로부터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20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할 제반공급시설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 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제 21 조 (설계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설계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

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고, 동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설계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사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감리비를 지급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에 감리업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와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자로 하여금 감리업무와 관련된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6개월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준공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리자의 예비준공검사를 거친 후 본 사업시설의 준공 3개월 전에 서울특

별시에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각 단계에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완결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되,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은 운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24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의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준공예정일의 익일부터 준공일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서 서

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기집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25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보증금(“사업이행보증금”이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갈음될 수 있음)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그 발급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설의 전체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거나 건설기간 중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단, 제51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제외)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제52조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이행보증금(혹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사업비 및 통행료

제 26 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금1,181억원(2001년 5월 1일 불

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2(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가.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설계감리계약 및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체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5.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6.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1년 5월 1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제4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정지원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⑦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⑧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출자자로 하여금 부록 9(자금투입계획) 및 부록 10(재무모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투자한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는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전부가 준공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인가를 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징수할 통행료를 위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 ① 최초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제30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제29조의 차종별 기준통행료(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이하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기준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최초 통행료를 결정한다. 다만, 최초 통행료가 기준

통행료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결정되는 경우 그 절상(하)된 부분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차기 통행료 조정시 반영한다.

③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적용(연간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분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최초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 1. 통행료
- 2. 통행료의 산출기초자료
- 3. 통행료의 징수방법
- 4.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5.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부록 4(차종별 기준통행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0 조 (사업수익률)

기준통행료 산정을 위하여 적용될 실질사업수익률은 연 6.25%로 한다.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 ③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①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서울특별시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 2. <삭제>
 -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의 협의 기간 동안 통행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이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 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통행료의 산정결과를 당사자 모두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며,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33 조 (통행료 징수 방법)

- ① 통행료의 징수방식은 유인식통행료징수방식과 전자요금징수방식(ETCS)을 혼용하기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예관한특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위 제3항의 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보수를 서울특별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다른 구간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목적, 이용에 따른 편

익,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협약토록 한다.

제 36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시설에 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교통량 현황 및 본 사업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37 조 (운영비용)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847억원으로 한다.

② 부록 6(운영비용)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한 경우 이외에는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서울특별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6(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

감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비용이 증감하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④ 사업기간 동안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부록6 (운영비용) 및 부록 10(재무모델)에 반영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통행료 산정이나 조정시 그와 같은 세율의 변동을 반영하거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이 감소되더라도 그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감소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익은 다음 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제 6 장 서울특별시 지원사항

제 39 조 (통행료수입 환수)

①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 5(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삭 제>

③ 무상사용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잉여수익금의 50%를 서울특별시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④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통행료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통행료 수입 환수에 관한 내역 포함)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교통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도로나 대체 교통수단이 신설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본 도로에 연결된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신규 연결도로의 개설 등으로 본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른 증가된 통행료수입의 환수는 본조 제3항에 따른다.

제 40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해 경차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나, 본 협약 체결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한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감면하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본 도로를 통행한 감면대상차량의 실적치를 토대로 그 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상호 합의 하에 통행료로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단,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는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경차통행료 감면이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통행료감면의 경우에는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되,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본 조에 의한 보전금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1 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 ①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기로 한 암사대교(6차로) 구간이 무상사용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완공 및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시행구간의 완공 및 운영까지의 기간 동안의 통행료 보장 및 환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에 관하여는 재정지원을 한다.
- ③ <삭 제>
- ④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위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2 조 (재정지원의 절차)

-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본 협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한 후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지급기한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한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연도 개시일을 이자기산일로 하여 실제지급일까지 회사채유동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 날로부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중 총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시일 이후에 지급될 경우, 동 지급금에 대한 체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급금이 서울특별시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3 조 (서울특별시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 체결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자본 및 원금의 대외송금액이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환전되고 국외의 은행계좌로 송금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설계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반절차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 44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과 그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③ 당사자가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2. 통행료 산정 및 조정기준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률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입 시기와 납입금액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7.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5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48조에 정한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

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4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수입손실이나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7 조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4. 서울특별시의 보상업무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본 협약 제4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

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건설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48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협약 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물이나 유물 또는 기타 지장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③ 건설기간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80%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직·간접비용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도로의 통행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부보한 보험이나 책임있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비용은 제외된다.

④ 운영기간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족 금액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본조 제5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본 협약 제42조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처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운영자금의 부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용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 49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상대방

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은 제61조 내지 제63조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0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① 본 협약은, 제51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서울특별시는 관

런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1 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에 의한 중도해지 - 제46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한 중도해지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금융완결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중도해지되고 120일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가. 동 사유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나. 동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다. 동 사유가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중도해지를 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제 52 조 (매수청구권)

- ① 본 협약 제51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②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액(“매수가액”)은 가액산정 당시의 잔여 무상사

용기간 기대수익을 사업수익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단,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으로 한다. 잔여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본 협약 부록 7(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제 53 조 (해지시지급금)

- ① 본 협약이 제51조 제1항(제51조 제3항 제3호 나목 포함)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본 조의 해석에 있어서 관리운영권에 저장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장권자를 의미함)에게 지급한다.
 -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본 협약이 제51조 제2항(제51조 제3항 제3호 가목 포함) 및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지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본 협약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1조 제3항(제51조 제3항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본 협약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제51조 제3항(제5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 나목 제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⑤ 중도해지사유가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지급금과 제52조에 정한 매수가액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제 54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 1.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수령한 어떠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 2.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게 해지일 현재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서울특별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한다.

② 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위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③ 당사자간에 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을 결정한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61조 내지 제6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서 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서울특별시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상계후 지급될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이 총선
 순위채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제 55 조 (협약 종료의 효과)

- ①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매수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매수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
 분)은 즉시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
 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서울특별시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
 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
 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
 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
 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
 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협약이 중도해지 또는 매수
 된 경우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전한다.

제 56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
 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
 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
 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7 조 (양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본 협약 및 도급계약에 따
 라 가지는 권리와 사업시행자의 동산, 부동산, 금전채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5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서울특별시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대체사업자(“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 통지로 예비대체사업자(“예비대체사업자”)를 서울특별시에 추천(“추천통지”)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는 추천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필요한 경우 예비대체사업자 포함)에게 예비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예비대체사업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은 날, 운영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지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운영권이 등록된 날(이하 양날을 각각 “대체일”이라 한다)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승계하며, 대체일 이후에는 대체사업자를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대체일 현재 존재했던 본 협약의 해지 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합의하기로 한다.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59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60 조 (분쟁의 해결)

- ①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분쟁을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61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61 조 (분쟁금액)

- ①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은 그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율로 계산되는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제 62 조 (중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④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63 조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4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 65 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
-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③ 본 협약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 ⑤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 66 조 (문서의 우선 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간에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본 협약

이 우선하며, 본 협약의 해석상 모호함이나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67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8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 (협약준수의무 및 면책항변의 배제)

- ① 당사자는 본 협약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본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서울특별시 또는 그 자리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의무에 관하여 주권면책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70 조 (일부무효)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위법, 무효이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관할의 법률에 따른 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협약의 나머지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1 조 (비밀유지)

- ① 당사자들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

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72 조 (목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73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74 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시는 본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감리업무
2. 제26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4. 기타 본 협약 내용상 위임된 사항

제 75 조 (통지)

①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 또는 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변경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 서울특별시청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참조 : 도로계획과
전화 : 02) 2133-8074
팩스 : 02) 2133-0763
E-Mail : yurilee6@seoul.go.kr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용마터널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226(아천동)
참조 : 관리·운영총괄
전화 : 031) 556-5078
팩스 : 031) 556-5080

E-Mail : yoon0732@hanmail.net

② 본 협약에 따른 통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접 당해 주소에 도달된 때에, 모사전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발송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협약에 따른 통지의 효력은 도달된 때에 발생된다. 다만, 통지가 도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니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도달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은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제 76 조 (본 협약의 승계)

<삭제>

제 77 조 (언 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첨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사업시행자

용마티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진 섭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용마터널 주식회사의 출자자들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부록 1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

발해인프라투자회사
 법인이사 KB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현 승



SK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재 현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삼 선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석 취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중 권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승



출 자 자	지 분 율	비 고
발해인프라투자회사	60.0%	
SK건설주식회사	12.4%	
대림산업주식회사	9.6%	
롯데건설주식회사	9.6%	
동부건설주식회사	6.0%	
원하종합건설주식회사	2.4%	
합 계	100%	

부록 2

총 (민 간) 사 업 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	
2. 설 계 비	25	
3. 공 사 비	1,041	
4. 보 상 비	-	
5. 부 대 비	65	
1) 설 계 감 리 비	1	M/F, C/F
2) 시 공 감 리 비	24	
3) 공 사 보 험 료	10	
4) 사업이행보증보험	2	
5) 사후환경영향평가비	1	
6) 환경영향평가용역비	0.43	
7)교통수요 재분석비	0.25	
8) 금융부대비용	27	
6. 운 영 설 비 비	21	
7. 제 세 공 과 금	-	
8. 영 업 준 비 금	29	
합 계	1,181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록 3

추 정 통 행 량

(단위 : 대/일, 양방향)

년 도	소 형	중 형	대 형	합 계
2014	21,200	1,061	101	22,362
2015	25,548	1,276	124	26,948
2016	29,274	1,460	143	30,877
2017	32,853	1,641	157	34,651
2018	36,347	1,819	178	38,344
2019	36,662	1,833	178	38,673
2020	36,975	1,856	178	39,009
2021	37,295	1,870	178	39,343
2022	37,622	1,884	178	39,684
2023	37,941	1,905	185	40,031
2024	38,226	1,912	185	40,323
2025	38,503	1,927	185	40,615
2026	38,780	1,941	185	40,906
2027	39,058	1,955	185	41,198
2028	39,334	1,969	192	41,495
2029	39,620	1,983	192	41,795
2030	39,903	1,997	192	42,092
2031	40,195	2,012	192	42,399
2032	40,480	2,033	192	42,705
2033	40,770	2,040	199	43,009
2034	41,069	2,054	199	43,322
2035	41,360	2,075	199	43,634
2036	41,666	2,083	199	43,948
2037	41,972	2,097	199	44,268
2038	42,263	2,118	206	44,587
2039	42,569	2,132	206	44,907
2040	42,882	2,146	206	45,234
2041	43,187	2,168	206	45,561
2042	43,507	2,175	206	45,888
2043	43,813	2,189	213	46,215
2044	43,813	2,189	213	46,215

※ 소형차 1,028원(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기준, VAT 포함) 징수시 통행량

부록 4

차종별 기준통행료

구 분	차 종	통 행 료
소 형	승용차 소형버스 (16인 이하) 소형화물 (2.5톤 미만)	1,000원
중 형	대형버스 (17인승 이상)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이하)	1,700원
대 형	대형화물 (10톤 초과)	2,200원

-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 ※ 요금부과 기준 = 소형 : 중형 : 대형 = 1.0 : 1.7 : 2.2

부록 5

추정 통행료 수입

(단위 : 억원)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14	9	13	2030	145	339
2015	95	142	2031	146	351
2016	108	167	2032	147	365
2017	122	193	2033	148	378
2018	133	217	2034	149	392
2019	133	225	2035	150	407
2020	134	234	2036	151	422
2021	136	243	2037	153	438
2022	137	252	2038	154	455
2023	138	262	2039	155	472
2024	139	272	2040	156	489
2025	140	282	2041	157	508
2026	141	292	2042	158	526
2027	142	303	2043	159	546
2028	143	315	2044	141	499
2029	144	327	합 계	4,264	10,326

- ※ 불변가격은 2001년 5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3% 반영
-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부록 6

운 영 비 용

(단위 : 억원)

년도	불변가격		계
	운영비용	법인세	
2014	3	-	3
2015	20	-	20
2016	22	-	22
2017	21	-	21
2018	22	-	22
2019	23	-	23
2020	21	1	22
2021	24	8	32
2022	25	9	34
2023	21	9	30
2024	41	11	52
2025	22	11	33
2026	24	11	36
2027	48	12	60
2028	27	8	34
2029	25	13	38
2030	23	15	38
2031	25	16	41
2032	28	17	44
2033	27	16	43
2034	41	17	58
2035	25	19	44
2036	26	19	45
2037	25	19	45
2038	29	21	50
2039	27	22	49
2040	26	24	49
2041	27	25	52
2042	62	25	87
2043	28	17	45
2044	38	45	83
합 계	847	407	1,254

※ 2001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법인세는 22% 적용(주민세 포함)

부록 7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년도	현금유출				현금유입		
	총사업비	운영비	현금유출계	현재가치	통행료수입	현금유입계	현재가치
합계	1,181	1,254	2,434	796	4,264	4,264	796
2003	0		0	0			
2004	16		16	13			
2005	8		8	6			
2006	3		3	2			
2007	3		3	2			
2008	3		3	2			
2009	31		31	18			
2010	76		76	42			
2011	247		247	129			
2012	317		317	156			
2013	317		317	147			
2014	161	3	164	72	9	9	4
2015		20	20	8	95	95	39
2016		22	22	8	108	108	42
2017		21	21	8	122	122	44
2018		22	22	8	133	133	45
2019		23	23	7	133	133	43
2020		22	22	7	134	134	41
2021		32	32	9	136	136	39
2022		34	34	9	137	137	37
2023		30	30	8	138	138	35
2024		52	52	12	139	139	33
2025		33	33	7	140	140	31
2026		36	36	7	141	141	30
2027		60	60	12	142	142	28
2028		34	34	6	143	143	27
2029		38	38	7	144	144	25
2030		38	38	6	145	145	24
2031		41	41	6	146	146	23
2032		44	44	6	147	147	22
2033		43	43	6	148	148	20
2034		58	58	8	149	149	19
2035		44	44	5	150	150	18
2036		45	45	5	151	151	17
2037		45	45	5	153	153	17
2038		50	50	5	154	154	16
2039		49	49	5	155	155	15
2040		49	49	4	156	156	14
2041		52	52	4	157	157	13
2042		87	87	7	158	158	13
2043		45	45	3	159	159	12
2044		83	83	6	141	141	10

보 험 내 역

1. 공사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포함) 2) 예정이익상실보험	
보 험 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본공사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등에 입은 재물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과,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 결함 등 2) 예정이익상실보험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건설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공사 착공시점 ~ 공사 완공시점	
보험금액	1) 건설공사보험 - 재물손해 : 공사금액+운영설비비+시공감리비 - 제3자 배상책임보험 : 10억원 2) 예정이익상실보험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 상실분	

2.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3) 기업휴지보험(B.I)	
보 험 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완성토목공사물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미숙련, 부주의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비,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분화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도과, 지반침하, 붕괴, 시공 및 재질 결함 등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3자 배상책임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B.I)	전위험 담보
담보지역	사업구간 및 주변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 : 공사금액 2) 영업배상책임보험 : 10억원 연간 총보상한도액 3) 기업휴지보험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자 금 투 입 계 획

(단위 : 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후순위차입금	타인자본
200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	0	
	소계					0	0	
2004	1분기				6	6		
	2분기				10	10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17	17		
2005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6	6		
	4분기				1	1		
	소계				9	9		
2006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4	4		
2007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3	3		
2008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1	1		
	4분기				1	1		
	소계				4	4		
2009	1분기				1	1		
	2분기				1	1		
	3분기				7	7		
	4분기				30	30		
	소계				40	40		
2010	1분기				19	19		
	2분기				10	10		
	3분기				15	15		
	4분기				57	32	25	0
	소계				101	76	25	0
2011	1분기				79	26	53	0
	2분기				81	27	54	0
	3분기				84	28	56	0
	4분기				108	36	72	0
	소계				351	117	234	0
2012	1분기				128	10	21	96
	2분기				115			115
	3분기				119			119
	4분기				127			127
	소계				488	10	21	457
2013	1분기				139			139
	2분기				140			140
	3분기				137			137
	4분기				115			115
	소계				532			532
2014	1분기				108			108
	2분기				115			115
	3분기				77			77
	4분기				37			37
	소계				336			336
합계					1,884	280	280	1,324

재 무 모 델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